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3의2] <개정 2026. 9. 29.>

## 일반회계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기관의 구분(제22조의3제2항 관련)

| 일반회계 |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 |
|---|---|
| 1. 국립국제교육원<br>2.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<br>3. 국방홍보원<br>4. 국방전산정보원<br>5. 국립과학수사연구원<br>6. 삭제 <2026. 9. 29.><br>7. 국립재난안전연구원<br>8. 국립중앙극장<br>9. 국립현대미술관<br>10. 한국정책방송원<br>11. 한국농수산대학교<br>12. 국립종자원<br>13.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<br>14. 국토지리정보원<br>15. 항공교통본부<br>16. 국립수산과학원<br>17. 해양수산인재개발원<br>18. 국립해양측위정보원<br>19. 국가데이터연구원<br>20. 국세상담센터<br>21. 관세국경인재개발원<br>22. 삭제 <2021. 12. 28.><br>23. 삭제 <2021. 12. 28.><br>24. 삭제 <2021. 12. 28.><br>25. 삭제 <2021. 12. 28.><br>26. 삭제 <2021. 12. 28.><br>27. 국립소방연구원<br>28. 국립문화유산연구원<br>29. 국립해양유산연구소<br>30. 궁능유적본부<br>31. 국립원예특작과학원<br>32. 국립축산과학원<br>33. 국립산림과학원<br>34. 국립수목원<br>35. 항공기상청 | 1. 국립생물자원관(「환경정책기본법」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)<br>2. 화학물질안전원(「환경정책기본법」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)<br>3. 국립아시아문화전당(「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) |

| | |
|---|---|
| 36. 국립기상과학원<br>37. 해양경찰정비창 | |